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95

제출년월일 : 2011. 11. 15.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토록하고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 (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 비용추계서, 세출, 세입
- 다. 비용추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라.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 마. 비용추계서 협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 □ 제정조례안 : 불임

##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1. 10. 26. ~ 11. 4.(10일간)
- 의견내용 : 의견없음

##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타 시·군 현황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안산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

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相計)하여 추계한다.

-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안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실·과장	기획예산과장	
안	직위·성명	이 규환	
자	담당팀장	법제계장	
	직위·성명	임효길	
	담당자	이경남	
	성명·전화	(행정 2719)	

[별지 제1호서식]

(제2-1쪽)

## ○○○안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조제○항, 제○○조제○항

#### 나. 비용 발생 요인

- 

### 2. 비용추계

####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나. 비용추계결과

구 분	년	년	년	년	(단위: 천원)	
					년	비 고
총 소요액						
○○사업						
○○사업						

#### 다. 재원조달방안: 000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기획예산과-000( . . . )호]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0000

### 4. 작성자: ○○○실(국) ○○과장(○○○)

(제2-2쪽)

## &lt; 연도별 비용 추계표 &gt;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 년)	2차연도 ( 년)	3차연도 ( 년)	4차연도 ( 년)	5차연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소 계						
의존 재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소 계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지 제2호서식]

**○ ○ ○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 ○ ○ 실(국) ○ ○ 과장(○ ○ ○)**